

평창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3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수입증지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판매인자정과 관련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, 중복된 결격요건, 현실성 없는 항목을 삭제하여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판매인의 수입증지보유량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0 특정인에 대한 판매인 우선 지정을 완화하기 위함 (안 제7조제3항)
- 0 판매인의 의무 중 증지보유량 규정의 비현실성을 반영 (안 제10조 제2항)
- 0 판매인 지정 취소 규정 삭제 (안 제13조제2항)
- 0 판매인 승계 규정 삭제 (안 제14조)
- 0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규정 삭제 (안 제15조)
- 0 판매인의 장부비치 및 검사 규정 삭제 (안 제2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필요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필요없음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판매인은 신의 성실을 죄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지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※ [별지 제9호서식] 을 삭제한다.

※ [별지 제6호서식] 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7조(판매인 지정) ①증지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(이하 "판매인"이라 한다.)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.</p> <p>②군수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군수는 직장새마을금고, 직원공제 등 직원복지회(이하 "직장금고"라 한다.)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판매인 지정) ①</p> <p>②</p> <p>③ <삭제></p>
<p>제10조(판매인의 의무) ①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용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판매인의 의무) ①</p> <p>②판매인은 신의성실을 죄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증지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.</p>
<p>제13조(지정의 취소) ①군수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②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.</p>	<p>제13조(지정의 취소) ①</p> <p>② <삭제>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4조(판매인의승계)판매인이 사고,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이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삭제></p>
<p><u>제15조(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)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자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판매인이 판매장소(주소지)를 변경하였을 때 2.판매인이 사망한 때 3.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 4.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	<p><삭제></p>
<p><u>제27조(장부비치 및 검사) ①판매인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[별지 제9호 서식] <u>수입증지판매신고서</u></p> <p>[별지 제6호 서식] <u>수입증지수불부</u></p>	<p><삭제></p> <p>[별지 제9호 서식] <삭제></p> <p>[별지 제6호 서식] <삭제></p>